

붙임 1

발명교사인증제 응시기준별 인정범위(개정내용 반영)

□ 등급별 응시 기준

등급	필수항목		선택항목				검정 시험
	발명교육 이수실적(누적)	발명교육 실무경력	발명대회 입상지도	발명교육 강의실적	연구특허 실적	비고	
2급	4학점 또는 연수 60시간 (필수 : 집합교육 30시간 이상)	-	-	-	-	-	○
1급	연수 120시간 이상 (필수 : 집합교육 60시간 이상)	3년	15점	20시간	150%	2항목 충족	○
마스터	연수 180시간 이상 (필수 : 집합교육 120시간 이상)	7년 (최근 15년 이내 실적)	30점	40시간	300%	2항목 충족	1급 검정시험 통과자

○ 필수영역

응시기준	인정범위	증빙자료
필수영역	※ 인정기간 : 최근 10년 이내 교육이수 실적 (마스터, 1·2급 공통)	
	- 전체 이수 실적 중 등급별 최소 필요한 필수 집합연수 이수시간 (2급) 30시간 이상, (1급) 60시간 이상, (마스터) 120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함 - 원격교육이수 만으로는 인정 불가 - 원격교육이수는 이수 시간의 50%만 인정 (예: 원격연수 60시간 이수 시, 발명교육 이수실적 30시간으로 인정)	
	※ 연수명에 발명/지식재산/특허 등 연수내용이 발명교육과 관련되어 유추되지 않는 경우, 연수커리큘럼을 함께 제시 (연수내용 중 발명관련 내용 소명 시 해당시간만 인정) ※ 불인정 : 과학, 수학, 인문, 정보, 영재교육관련 직무연수 ※ 실시간 쌍방향 연수는 집합연수로 인정	
	①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명지도자양성 과정 등 교원 직무연수 집합교육 ※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http://iipiti.kipo.go.kr	- 교원인사기록 카드 또는 - 해당교육기관 교육이수증명서
	② 시도교육청 주관 또는 시도교육청 위탁 발명교육 또는 발명영재 교육 집합연수 ③ 한국발명진흥회 종합교육연수원 교원직무연수 또는 특허청·한국발명진흥회 위탁 발명교육 또는 발명영재교육 직무연수 집합교육 ※ 종합교육연수원 운영 발명교원 직무연수과정 www.kipa.org → 지원사업 → 미래형발명인재양성 → 종합교육연수원 ※ 지역별 거점 교사대에 설치된 발명교사교육센터의 직무연수과정 : 충남대, 부산교대, 전주교대 발명교사교육센터 운영 직무연수	
	④ 한국발명진흥회 원격교육연수원의 발명교육 또는 발명영재 교육교사 직무연수 ※ 아이피티처 http://www.ipiteacher.net	
발명교육 이수실적	⑤ 특허청·한국발명진흥회 개발 표준교재로, 학부 및 대학원에서 2개 과목 4학점 이상 이수한 실적(C학점 이상) ※ 예비교사의 학점과 현직교사의 연수실적 연계가능(1학점=15시간)	대학교(원) 성적증명서

응시기준		인정범위	
필수영역	발명교육 실무경력	※ 실무경력 인정기간 : (1·2급) 최근 10년 이내 발명교육 실무경력 (마스터) 최근 15년 이내 발명교육 실무경력	
		• 특허청 지정 발명교육센터(구, 발명교실)	• 시도교육청 교육경력확인서
		• 시도교육청 지정 발명영재학급, 발명영재교육원 ※ 「주와 부 발명교사」는 동일하게 인정	• 시도특색가산점, 임용(임명 위촉)장
		• 시도교육청 지정 발명교육센터 및 발명영재교육원, 발명영재 학급 강사 • 지식재산일반 교과지도, 발명특허 특성화고 발명교과 지도 ※ 연간 교육시수 20~40시간 미만(0.5년)/ 40시간 이상(1년) ※ 증빙문서는 교육시수 확인이 가능한 공식문서로 제출	• 시도교육청 교육경력확인서 • 연간운영계획 및 결과보고(표자공문) • 강의위촉공문
		• 일반학교 자체 발명반 및 교내 발명동아리 (50% 인정) ※ 1회성 캠프 교육은 불인정	• 연간운영계획 및 결과보고(표자공문) • 학교장 임명
		• 특허청 청소년 발명기자단 운영위원 (50% 인정)	• 임명장 또는 해당 기관 확인서
		• 한국발명진흥회 원격교육연수원(아이피티쳐) 온라인 교원 직무 연수 운영강사(Tutor) 활동 (50% 인정)	• 해당 기관 확인서

○ 선택 영역 ※ 인정기간 : 최근 10년 이내 (마스터, 1급 공통)

응시기준		인정범위	증빙자료
선택영역	발명대회 입상 지도실적	• (전국)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• (전국)대한민국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• (전국)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5점 • 지자체, 17개 시도교육청 3점 • 공공기관, 대학, 기업체 2점 ※ 단, 동일대회 연간 실적 인정 상한선(9점) 도입 (동일대회 2건이상 입상 시 최대 9점 인정) ※ “발명관련 대회” 인정범위는 인증협의회 심사를 통해 인정	• 결과공문 또는 • 상장 (원본대조필 및 지도교사 명시)

○ **선택 영역** ※ 인정기간 : 최근 10년 이내 (마스터, 1급 공통)

응시기준		인정범위	증빙자료
선택영역	(외부기관) 발명강의 실적	※ 발명교육 강의실적은 교사, 학부모, 일반인 대상의 강의 • 특허청 발명교육센터의 발명교육 또는 발명영재교육 교사(원) 집합연수 강의 • 시도교육청의 발명교육 또는 발명영재교육 교사(원) 집합연수 강의 •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위탁한 대학 등에서의 발명교육 또는 발명영재교사(원) 집합연수 강의 • 한국발명진흥회 종합교육연수원의 발명교육 또는 발명영재교육 교사(원) 집합연수 강의 • 대학/대학원에서의 발명교육 또는 발명영재교육 강의 • 발명교육기관(발명교육센터, 발명영재학급/교육원)의 강의 • 상기 외, 기타 일반학교 및 기업체 등 위촉 발명관련 강의 (위촉공문 및 세부커리큘럼 필수제시) • 소속학교 강의실적의 경우, 계획 및 결과공문 제출 ※ 성인대상 강의는 50분이상 강의 시 1시간으로 인정 ※ 사이버튜터, 초·중·고등학생대상 강의 인정불가	• 발명유관기관 - 교육위촉공문 • 기타 기관 - 교육위촉공문, 세부커리큘럼 • 소속기관 - 계획 및 결과공문, 세부커리큘럼
	발명교육 연구·특허 실적	• 특허청 및 시도교육청에서 인정 및 선정된 발명연구과제(대회) • 발명교육 연구(시범)학교 결과물 ※ 1인(70%), 2인(50%), 3인 이하(30%)	• 특허청/시도교육청 연구과제 선정결과 공문 및 결과보고서 1부
		• 특허, 실용신안 등록 ※ 1인(100%), 2인(70%), 3인 이하(50%) • 디자인 등록 ※ 1인(50%), 2인 이하(30%)	• 특허증 • 실용신안등록증 • 디자인등록증
		•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KCI 학회지에 등재된 논문 - 1인(70%) - 2인(주저자/교신저자 50%, 공동저자 30%) - 3인 이하(30%)	• 별쇄본
		• 석사학위 (발명교육분야) : 150% • 박사학위 (발명교육분야) : 300% ※ "발명교육분야" 인정범위는 인증협의회 심사를 통해 인정 • 전국교원 발명품 경진대회 수상 - 금상, 은상, 동상, 특별상(70%) - 장려상(50%)	• 학위증명서 • 학위논문 1부 • 상장 사본 (원본대조필)

○ **혜택사항**

등급	해당 자격	비고
1급	• 발명교육대상 수상자 서류심사 면제 (검정시험 응시 필요)	신청자에 한함
2급	• 대학원 발명교육 또는 발명영재 전공 졸업자 2급 인증(무시험인증) * 발명·지식재산 관련 교과목(표준교재 내용 포함) 9학점 이상 이수 (교사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졸업 후 발급)	